

소매 물가조사지침

1976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소매 물가조사지침

1976

차례

1. 물가조사의 의의	3
2. 조사품목	6
3. 품질규격 및 단위	7
가. 품질규격	7
나. 품질규격 변경	7
다. 단위	8
4. 조사지역 및 대상처	9
가. 조사지역	9
나. 대상처	9
다. 대상처 선정기준	9
라. 보조대상처	10
마. 대상처 변경	10
5. 조사시점	11
6. 조사방법	12
7. 조사요령	12
8. 품질품목처리	13
9. 조사표류 기입요령	14
가. 소매가격표	14

나. 영화관람료 확인서	14
다. 방세 조사표	15
라. 납입금 확인서	16
10. 조사표류 발송	17
가. 조사표 발송	17
나. 질의 조회 응신	17
11. 명부 작성	17
가. 가격 조사부	17
나. 대상처 명부	18
부 록.	
I. 품목 및 품질규격	19
II. 조사상 문제품목의 참고사항	39

1. 물가조사의 의의

오늘날의 교환경제에서는 모든 상품의 가치는 화폐로서 표시되고 있다. 화폐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화폐의 구매력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화폐의 구매력이라 함은 화폐 한 단위가 교환에 있어서 획득할 수 있는 물자와 서비스의 수량을 의미한다. 화폐의 구매력은 일차적으로는 단일상품의 가격에 의하여 측정할 수가 있으며 나아가서는 일체의 상품의 가격을 종합함으로써 올바르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하여 특정의 개별상품의 가치를 화폐단위로서 표시된 것을 그 상품의 가격이라 하고 국민경제 내부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상품의 가격을 종합한 것을 물가 또는 물가수준이라 한다.

화폐의 구매력은 물가수준의 역수로서 표현되고 화폐의 구매력의 변동은 물가수준의 변동에 의하여 판정된다. 이러한 물가수준의 변동은 물가지수로서 표시되는데, 물가지수는 일정시점의 물가를 기준 (= 100)으로 하여 비교시점의 물가를 백분율로서 표시한 것이다.

화폐 소득이 일정한 경우에는 물가수준의 변동에 따라 실질소득은 변동하게 된다. 물가지수가 상승하면 화폐의 구매력 감퇴에 의하여 국민 경제생활은 궁핍하게 되고 반대로 물가지수가 하락하면 화폐의 구매력은 증가하여 국민경제생활은 풍족하게 된다. 결국 화폐소득에 대응하는 물가수준의 변동은 국민경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가격은 상품의 유통과정에 있어서 거래단계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으로 구분되고 종합적으로는 도매물가와 소매물가로 구별된다. 도매가격이란 상품이 생산자로부터 소매상에 이르는 단계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며 거래단계별로 몇개의 도매가격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생산자로부터 도매상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소매상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출하고 있는 도매물가지수를 위한 가격 자료로 쓰고 있는 도매가격은 제1단계의 거래에서 집약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Primary market price) 을 의미한다. 소매가격은 거래의 최종단계에서 소매상이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유통구조가 선진국과 같이 근대화되어 있고 유통질서가 확립되어 있다면 제1차 도매가격에서 최종 소매가격에 이르는 유통과정이 짧아지고 유통마진은 적정수준에서 결정되어 물가는 안정되어 나아가서는 국민 경제생활에 도움을 주나, 반대로 오늘날과 같이 유통구조가 복잡해지 무질서한 경우에는 거래단계별 가격질서가 문란하여 단계적 물가 수준의 변동을 정확히 포착할 수가 없게되고 따라서 그만큼 국민 경제생활도 불안정하게 된다.

한편 소매물가와는 개념상 비슷한 것으로 소비자불가불을 수 있다. 소비자불가란 소비자가 그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매상으로부터 구입하는 상품의 가격과 서비스 요금이 종합된 것으로서 직접 가계에서 지출한 수량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양자의 차이는 전자가 소매상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취하는 입장에 있음에 반하여 후자는 서비스 요금을 포함하여 실제로 소비자가 가제소비지를 계정에서 상품구입을 위하여 지불하는 가격을 취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예전래, 기계류등을 위시한 완전생산제에 있어서는 소매가격은 형성되나 가제에서 구입하는 소비자 가격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한편 서비스 요금은 소매상에서 판매하는 소매가격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다. 결국 소매가는 유통단계를 중심으로한 개념이고 소비자 물가는 가제소비지를 중심으로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이 양자를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이유는 소비자 물가지수 현제상의 실제적 필요에 기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제, 공표하고 있는 서울 및 전 도시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용되는 가격 자료는 소매가격 및 서비스 요금인 바, 여기서 말하는 소매가격은 소매상이 판매하는 가격(혹가)이 아니고 소매상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과 서비스 요금을 의미하고 그것은 개념상 소비자 가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수 현제에 있어서는 동질의 가격체열이 요구되는데, 소비자 구입가격만을 추적한다는 것은 동일 가구안에서의 소비지출의 품목과 구성비가 시제열 선상에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조사기술면에 있어서도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서는 계속적으로 정확한 가격 자료를 얻을 수 없으므로, 소매상의 판매가격과 소비자의 구입가격은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서 현의상 소매가격을 포함하여 소비자 물가지수 현

제의 가격 자료로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소매가격 자료는 실제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개념상의 소비자물가에 접근하는 가격으로 조사 수집된 것이라야 한다.

2. 조사 품목

도시가계 지출중 비중이 큰 품목으로서 지출구성 비가 $\frac{1}{10,000}$ 이상 되며 가격변동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338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도 시 별 조 사 품 목 수

도 시	총품목수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
전 도 시	338	123	54	7	54	100
서 울	331	120	54	6	54	97
부 산	322	118	45	7	54	98
대 구	319	118	46	6	54	96
인 천	318	117	45	6	53	97
대 전	318	117	46	6	54	95
광 주	315	115	44	6	54	96
전 주	317	116	46	6	54	95
춘 천	309	115	42	6	53	93
청 주	307	110	45	6	54	92
기 타 시	321	118	47	6	54	96

3. 품질규격 및 단위

가. 품질규격

- 1) 가격계열의 통일성이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품목별 조사 가격의 결정적 요소인 품질규격을 확정시켜 계속적으로 동일한 품질규격에 의한 가격조사를 하여야 한다.
- 2) 상품의 질, 크기, 무게, 모양, 생신지, 상표 등 그 상품의 가격이 다양함으로 단위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품질규격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 소비자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규격
 - 나)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규격
 - 다) 생산량이 많은 규격
 - 라) 시장출회가 많은 규격
 - 마)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규격
 - 바) 조사 지역별로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른 출회 소비되는 규격으로 상표를 지정한다.

나. 품질규격 변경

이미 지정된 품질규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의 경우 「품질규격 변동보고서」를 중앙에 제출하고 신·구 품질규격의

가격을 3회 조사보고하여 별단의 지시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보고
제속 신가격으로 조사한다.

1)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2) 생산양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예”(비닐봉지 제품이 캔 포장으로 된 경우)

3) 출회가 적어 가격의 대표성을 상실한 경우

4) 소비자 수요가 극소한 경우

5) 거래단위의 관습이 달라지는 경우

“예”(국수가 1근으로 거래되면 겟이 1kg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 단위

소비자의 구매관습에 따라 일반적으로 거래 단위를 설정한 것
이며 전국적으로 미터법에 의한 단위로 통일하였으나 거래 단위가
상이한 지역은 규정된 단위로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예”

1) 600g으로 책정된 쇠고기 1근을 375g으로 판매하는 지역
에서는 600g으로 환산한 가격을 조사 기입한다.

2) 풍치의 단위가 10마리인데 6마리에 100원으로 거래된다면
환산하여 167원으로 조사기입하여야 한다.

4. 조사지역 및 대상처

가. 조사지역

서울을 비롯한 31개 시에서 조사한다.

나. 대상처

조사대상 전품목을 조사할 수 있는 점포 또는 사업체를 선정하여 계속 조사하여야 한다.

다. 대상처 선정기준

- 1) 소비자 고객의 출입이 가장 많은 소매점포로서 가격의 대표성이 높고 계속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점포
- 2) 타조원과 중복된 점포는 제외하여야 한다.
- 3) 하나의 시장에 국한하지 말고 조사구역내에서 대표적점포를 선정한다.
- 4) 다음과 같은 점포는 조사대상처가 될 수 없다.

가) 도매점포

나) 도산매 점포로서 도매를 주로하는 점포

다) 통신 판매점

라) 중고품 판매점

마) 영업상태가 둘다

바) 중앙에서 지정하지 않은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등

라. 보조 대상처

보조대상처는 지정된 대상처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격조사
를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대상점포의 특별한 사유로 이상가격이 형
성되는 경우에 참고가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정대상처 외에 몇개의
보조대상처를 정하여 활용한다.

1) 지정된 대상처에서 조사품목이 일시 품절일 때.

2) 지정된 대상처에서 조사품목의 품질규격이 달라졌을 때.

3) 지정된 대상처의 일시 휴업.

마. 대상처 변경

다음의 경우에는 대상처 변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에 송부하
고 신구가격을 3회 보고하여 별단의 저시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온다.

1) 조사대상처가 폐업하는 경우

2) 조사대상처가 전업하는 경우

3) 조사품목을 취급하지 않게될 경우

4) 조사대상처의 상호 또는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5) 조사대상처가 대표성을 확실한 경우 등 인데 신규대상처의 선정은 대상처 선정기준에 의함은 물론 지도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5. 조사시점

가. 순기별 조사

(매월 5, 15, 25일) : (영화관람료·납입금·방세를 제외한 326 품목)

나. 월별조사

(매월 5일) : 영화관람료(2품목)

다. 분기별 조사

(매분기 말월 5일) : 납입금·방세(10품목)

조사일이 공휴일, 휴식일인 경우에는 조사일 전일에 조사하고 조사일이 명절(추석·성탄절등)인 경우에는 2일전에 조사하여 앞당긴 조사일이 휴식일, 공휴일이면 다시 1일전에 조사한다.

“예”

1) 5일이 휴일이면 4일에 조사하고 4일이 명절이면 2일에 조사한다.

2) 25일이 명절이면 23일에 조사하고 23일이 휴일이면 22일에 조사한다.

6. 조사방법

타계식 면접조사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조사한다.

7. 조사요령

손에 물가조사는 면접조사 므로 응답자와의 인간관계가 원활한 상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조사원은 응답자에게 본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다만, 통계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납득시켜 응답자로 하여금 가벼운 마음으로 가격을 알려 주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일정한 응답자를 상대로 가격을 조사한다.

나. 각 매스콤을 통하여 사전에 물가에 관한 충분한 예비지식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다. 항상 조사구내의 시황에 밝아야 한다.

라. 품질규격을 숙지함은 물론 유사품종에 대하여도 많은 지식을 갖는다.

8. 품절 품목 처리

다음의 경우에만 품절로 처리한다.

가. 계절적으로 완전히 시장거래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나. 생산이 중단되어 재고량이 품절되고 신제품이 생산되지 않을 경우

이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품절처리 하여서는 안되어 대상처에서 일시품절일 때는 조사구내의 타점포에서 조사하여 등락이 있을 때는 본 대상처의 전순가격에 등락률을 적용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비교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예” 갈치값이 전기에 100원이었고 금기에 품절인 경우 보조대상처에서 조사하여 동일규격이 120원이고 이 점포의 가격이 전기와 변동이 없다면 같은 100원으로 기입한다.

그러나 전기의 100원에서 120원이 되었다면 같은 추세로 보아 120원으로 처리한다.

또한 기본규격과 (70cm) 다른 규격의 갈치 (90cm) 만 출회되고 있을 때 전기 기본규격이 100원이고 90cm의 가격이 150원이였는데 금기 가격도 150원이라면 금기조사 가격은 100원이다. 그러나 금기 90cm 가격이 180원이라면 등급비율이 같다고 보아 ($100원 \times \frac{180}{150} = 120$) 120원이 금기 가격이다.

9. 조사표류 기입요령

가. 소매 가격표

1) 조사가 끝나면 가격원부에 위하여 가격을 이기하고 등락차액은 하락일 경우에만 차액앞에 △ 표를 하고 등락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2) 환산가격을 기입할 때는 원미단은 반올림하여 기입하고 그 내용을 비교란에 상세히 기입한다.

3) 조사표의 숫자는 숫자란의 ±정도 크기로 아랫부분에 기입하고 정정할 때는 지우지 말고 두줄로 획선을 치고 날인한다.

2	3	5.	6	△	2	0
					=	5

4) 조사표가 작성되었으면 누락 또는 오기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재검토하여야 한다.

5) 맨 후면의 물가동향란에는 시장과 물가동향 및 기타 참고사항을 상세히 기록한다.

나. 영화관련료 확인서

- 1) 극장명을 기입하고 개봉, 재개봉별로 해당란에 명기한다.
- 2) 품질규격에 맞는 영화명단을 기입하며 대작이나 특색영화, 쇼는 제외한다.

- 3) 방화와 의화를 명확히 구별하여 금액을 기록하며 특히 합작 영화는 방화로 기록하여야 한다.
- 4) 상영일자에 충복 또는 누락이 없도록 한다.
- 5) 가격의 등락이 있는 경우에는 영화요금(입장세 포함) 이외에 각종 구호금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그것이 포함되었으면 제외시킨다.
- 6) 1매의 조사표에 연기하여 조사한다.

다. 방세 조사표

- 1) 조사구 번호와 조사가구번호를 기입하고 반드시 가구주 성명을 기입한다.
- 2) 품질규격에 맞는 것만을 조사하여 방이 둘이거나 접포가 부설된 것은 제외시킨다.
- 3) 보증금과 매월 지불액란의 전기가격의 차오가 없도록 대조 확인하여 기록한다.
- 4) 전분기와 금분기의 금액이 차이가 있으면 등락사유(새로 전입 또는 수리등)를 명백히 기입한다.
- 5) 삼월세의 경우 보증금 잔액은 매월 지불액의 3배를 제한금액임을 명심하여 정확히 기록도록 한다. 예전대 50,000원 보증금에 5,000원의 삼월세(10개월)인 경우 다음 분기에는 보증금이

35,000원이 된다.

6) 세의 종류가 동일가구안에서 선정되는 경우에는 특히 전분기 가격에 차오가 없도록 한다. 예전에 전분기에는 200,000원 전세로 있다가 금분기에 100,000원 보증금에 매월 5,000원씩 지불하는 보증부월세로 변경되었다면 전분기에는 전세의 보증금란에 200,000원 금분기에는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란에 100,000원 매월 지불액란에 5,000원을 각각 기록하고 그 변경사유를 등락사유란에 명백히 기재 한다.

7) 대상가구를 조사원 일의로 변경하여 서는 안된다.

라. 납입금 확인서

- 1) 소정 양식에 따라 기입하되 반드시 학교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 2) 국민학교 육성회비는 월별로 정수를 하지만 분기별 조사이므로, 분기별로 합산하여 기록하며 등급의 총화가 100이 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3) 중·고등학교의 납입금은 반드시 2학년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 4) 중·고등학교 육성회비란의 A는 전액면제자 B는 전액납부자 이므로 둘의 합계는 100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5) 대학교 납입금은 자율적 경비의 내용에 특히 유의하여 조사 시점마다 그 내역의 추가 또는 탈락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문과계

(국문과 우선) 3년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조사표류 발송

가. 조사표 발송

조사원은 조사시점 현재로 가격조사가 끝나면 지도원의 확인을 받아 즉시 조사표를 중앙에 우송하여야 한다. 가격보고는 신속을 위하여 조사원의 일상상 자유로 지역되어서는 안되어 조사원 유고시에는 지도원이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질의조회 응신

- 1) 질의조회 응신서를 접수하면 접수 즉시 내용에 따라 재조사 한다.
- 2) 질의조회 응신기일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11. 명부 작성

가. 가격조사부 (가격원부)

조사원은 우선적으로 가격조사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이를 휴대하고 조사하여야 하며 품질규격 및 대상처 또는 지정상표가 번경되었을 경우에는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중앙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

으면 즉시 가격조사부를 정정 기입하여 조사에 차오가 없도록 하여
야 한다.

나·대상처 명부

1) 조사대상처 명부

서식에 의거 명부를 작성하여 품목수의 합계가 당해 조사구
의 조사품목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2) 품목별 대상처 명부

조사표상의 품목순서대로 기입하여 당해 조사구에서 조사하는
품목만 기입함으로 대상처별 명부의 품목총수 및 대상처수는 일치되
어야 한다. 대상처 명부는 2부작성하여 1부는 중앙에 송부하고
1부는 조사원이 비치한다.

부 록

I. 품목 및 품질규격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10101	쌀 (일반미)	정미	8 kg (10 e)
10102	쌀 (방출미)	정부미 또는 농협방출미	8 kg (10 e)
10103	찹 쌀	정미	8 kg (10 e)
10104	보리쌀 (정백)	쌀보리	7.65kg (10 e)
10105	보리쌀 (암백)	비닐봉지포장 3kg들이 (농협제품)	1 포
10106	콩	백태	7.5 kg (10 e)
10107	팥	처두	8.33kg (10 e)
10108	녹 두	흑갈색	8.33kg (10 e)
10109	倨 쌀	차조	7.89kg (10 e)
10110	밀 가루	중력분 2등품, 제분율 77%, 22kg들이 (상표지정)	1 포
10111	수수 쌀	차수수	10 e
10112	밀	참밀	7.5 kg (10 e)
10201	쇠고기	정육	600 g
10202	돼지고기	정육	600 g
10203	닭고기	화이트종 (우)잡아서 털뽑은것 1마리정도	1 kg
10301	조기	생선길이 30cm정도 (우)	1 마리
10302	갈치	생선몸길이 70cm정도	1 마리

품목번호	품 복 명	품 질 규격	단 위
103.03	생 명 태	생선길이 45㎜정도(우)	1 마리
103.04	고 등 어	생선길이 35㎜정도	1 마리
103.05	꽁 치	생선길이 30㎜정도	10 마리
103.06	가 자 미	생선길이 30㎜정도, 폭 15㎜정도	1 마리
103.07	전 강 이	생선길이 20㎜정도	1 마리
103.08	병 어	생선길이 25㎜정도	1 마리
103.09	풀 오징어	생선몸길이 25㎜정도	10 마리
103.10	글	싱싱한것	375 g
104.01	글 비	길이 30㎜정도 10마리	1 두통
104.02	마른 멸치	황백색길이 5㎜정도	375 g
104.03	마른오징어	몸길이 25㎜정도 (주문진 산)	20 마리
104.04	북 어	황태길이 40㎜정도	1 마리
104.05	새 우 것	주젓(고봉)	1 e
104.06	멸 치 것	완전히 삭은것	1 e
105.01	달걀	흰색, 상란 개당 50g정도	10 개
105.02	분유	서울분유 450g들이	1 통
105.03	연유	서울연유 397g들이	1 통
105.04	목장우유	각지방 우유협동조합제품 180cc들이 (고점배달)	1 병
106.01	무 우	재래종, 일없는것, 3개정도	3.75kg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10602	배 추	호배추	3.75 kg
10603	양 배 추	결껍질 벗긴것	3.75 kg
10604	파	개량파, 머리둘레 6 cm정도	3.75 kg
10605	양 파	3개정도	375 g
10606	시금치	신선한것	375 g
10607	콩나물	길이 5 cm정도	375 g
10608	상 치	잎상치	375 g
10609	당근	2개정도	375 g
10610	오이	개량종, 애오이, 길이 25 cm정도 (개당 120 g정도)	10개
10611	호박	애호박 600 g정도	1개
10612	가지	길이 25 cm정도	10개
10613	도마도	2개정도	375 g
10614	감자	흰색 25개정도	3.75 kg
10615	고구마	15개정도	3.75 kg
10701	김	개량김, 검정색	10장
10702	미역	대장작 (180 cm × 190 cm정도) (상표지정)	1장
10703	다시마	달린것	375 g
10801	고추	제대종, 완전히 마른것	600 g
10802	고추가루	증가루, (고등)	0.2 g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10803	마늘	마른것, 칙경 5 mm정도	1 겹
10804	소금(천일염)	국산, 1등염(고봉)	2 봉
10805	" (재제염)	국산, 고운소금(고봉)	2 봉
10806	참깨	흰색	1 봉
10807	참기름	공장제품	0.18ℓ
10808	채종유	유채유	0.18ℓ
10809	콩기름	해표(동방유량), 플라스틱병 900ml 들이(KS, 표시품)	1 병
10810	들기름	공장제품	0.18ℓ
10811	설탕	백설포(제일제당), 비닐포장 500g 들이(KS, 표시품)	1 포
10812	구루타진산소다	신선로표(미원), 비닐포장 100g들이 (KS, 표시품)	1 포
10813	간장	샘표(진간장), 900ml들이	1 병
10814	고추장	샘표, 비닐포장 500g들이	1 포
10815	생강	10개정도	375 g
10816	식초	화영식초, 유리병 100ml들이	1 병
10817	후추가루	캔포장 100g들이(상표지정)	1 통
10901	두부	200g정도(공장제품)	1 모
10902	라면	삼양쇠고기라면, 120g들이	1 봉
10903	국수	공장제품	375 g
10904	당면	순녹말	375 g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10905	단 무지	왜무우	375 g
10906	마 아 가 린	소머리표 (서울스노우파이어) 225 g들이	1 개
10907	소 시 지	마이소세이지 (진주제품), 비닐포장 100 g들이	1 개
10908	통조림 (생선)	꽁치통조림, 425 g들이 (상표지정)	1 통
10909	" (파실)	복숭아통조림, 425 g들이 (상표지정)	1 통
11001	사과 (홍위)	개당 180 g정도	10 개
11002	" (국광)	개당 200 g정도	10 개
11003	배	개당 450 g정도	10 개
11004	복숭아	빼도, 개당 250 g정도	10 개
11005	포도	혹갈색	375 g
11006	감	홍시, 개당 150 g정도	10 개
11007	꽃감	꽃이당 10개	1 꽃이
11008	밤	늙은것 (고봉)	1 e
11009	밀감	제주산, 개당 100 g정도	1 개
11010	바나나	수입품	375 g
11011	참외	운천참외 (나이론참외) 개당 600 g정도	10 개
11012	수박	개당 5kg정도	1 개
11013	딸기	개량종	375 g
11014	빵 (크림빵)	삼립빵, 비닐포장품, 40 g들이	1 개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11102	빵(식빵)	삼립식빵 900g	1개
11103	빵(카스텔라)	삼립표, 비닐포장품 50g들이	1개
11104	전 빵	100g들이 (상표지정)	1봉
11105	드롭스	해태왕드롭스 80g들이	1봉
11106	비스켓	마미소프트비스켓 (오리온표) 5개들이 (28g×5)	1봉
11107	센베이	보통풀	375g
11108	카라멜	뉴소프트카라멜 (해태파자) 32g들이	1갑
11109	초콜렛	해태블랙초콜릿 (28g)	1개
11110	검	셀럽민트 (해태제파), 6개들이	1갑
11111	빵 콩	볶은것, 속껍질 있는것 (고봉)	1봉
11112	아이스크림	해태매도글드콘 100cc	1개
11113	야이스캔디	빙고 아이스바, 60cc (상표지정)	1개
11201	클라라	로카클라 190ml들이	1병
11202	사이다	칠성사이다, 340ml들이	1병
11203	쥬스	오한·씨 (동아제약) 190ml들이	1병
11204	코오피	다방 판매품	1잔
11205	홍차	다방 판매품	1잔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11206	필 코	다방 판매품	1 잔
11301	백 주	오비 640㎖ 들이	1 병
11302	소 주	진로 25도 ~ 30도, 360㎖ 들이	1 병
11303	청 주	백화수복, 1,800㎖ 들이	1 병
11304	약 주	주류판매점 판매품	1.8ℓ
11305	탁 주	주류판매점 판매품	1.8ℓ
11306	포 도 주	진로포도주, 360㎖ 들이	1 병
11401	곰 탕	1 금대중식당	1 그릇
11402	냉 면	1 금대중식당	1 그릇
11403	짜 장 면	1 금중화요리점	1 그릇
11404	우 동	1 금중화요리점	1 그릇
11405	초 밥	1 금화식집, 김초밥	1인분
11406	비 텁 밥	1 금대중식당	1 그릇
20101	방세(전세)	적벽돌 또는 목조기와집, 부역있는 온돌방 1개	※
20102	" (월세)	"	1개월
20201	도 배 지	벽지, 중질지 3색도, 두루마리 54cm × 550cm	1 필
20202	창 호 지	전주산, 기계지, 표백(20장)	1 권
20203	장판지(비닐)	락기비나루제품, 8자방 1컵용, 0.8mm 124cm × 485cm	1 장
20204	" (종이)	황색 4배지, 110cm × 95cm 정도, (전주산)	1 장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20205	시 멘 트	일반용, 40 쪽들이 (상표지정)	1 포
20206	판 유 티	한국유리공업제품, 투명, 두께 2mm 1평	918㎠
20207	페인트	제비포 (건설화학제품), 흰색, 유팡, 외부용 1급품 4 쪽들이	1 통
20208	합 석	별표 (일신산업) #31 (두께 0.23mm) 90.9㎠ × 181.8cm 평판	1 장
20209	스 레 이 트	한국스레이트제품, 두께 6mm, 72.72㎠ × 181.8㎠, 석면, 소콜 (11.5) (KS 표시품)	1 장
20301	수 저 (은)	성인용 70%은, 두께 75 ㎛정도, 것가 탁포함 단순무늬	1 벌
20302	* (스테인레스)	성인용, 주물제품, 것가 탁포함, 단순무늬	1 벌
20303	스테인레스주발	성인남자용, 대접포함, 단순무늬, 두께 1.5mm (상표지정)	1 벌
20304	양 은 솔	직경 30mm, 두께 0.5mm (상표지정)	1 개
20305	남 비	황색 알마이트프레스제품, 직경 18mm (상표지정)	1 개
20306	접 시	직경 20mm, 무늬단조 (상표지정)	1 개
20307	컵	유리제품, 1홉 7작들이, 보통품 6개 (상표지정)	1 조
20308	주 전 자	선학표, 황색 알마이트프레스제품, 2작들이 (KS 표시품)	1 개
20309	후 라 이 펜	스테인레스제품, 직경 25mm정도	1 개
20310	코 오 퍼 셋 트	행남사, 홍장미무늬, 유색 6벌, 1등품	1 조
20311	비 커 키	프라스틱제품 15 쪽들이 투경포함 (상표지정)	1 개
20312	향 야 러	오지, 유팡, 손잡이 달린것, 투경제외 40 쪽들이	1 개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20313	세 슷 데 야	프라스틱제품, 직경 35 cm (상표지정)	1개
20314	시계 (탁상용)	세이코 (한국시계제품), 코로나형(원형)	1개
20315	" (벽시계)	세이코 (한국시계제품), 4PC-821형	1개
20316	전 기 다 리 미	자동열조정장치 부착 100V-150W-250W-400W-500W (상표지정)	1대
20317	전구(밸브등)	투명 100V-30W, 일반조명용 (상표지정)	1개
20318	" (형광등)	번개표, 주광색, 갓제외 20W, 일반조명용 (KS 표시품)	1개
20319	책 상	철강제품, 윗설합 1개, 편축설합 3개 (910mm X 610mm X 760mm) (상표지정)	1개
20320	자 전 거	3000리호, 표준형 (26인치), 라이트와 거울부착	1대
20401	텔레비전수상기	금성사제품, TV 83 S, 48.2cm (19인치) 트란지스터 부착	1대
20402	선 풍 기	금성사제품, DH3513 H형, 35.56cm (14인치)	1대
20403	냉 장 고	금성사제품, GR-1640형, 용량 160ℓ (540mm X 600mm X 1,240mm)	1대
20404	라 디 오	금성사제품, RM 800, 휴대용	1대
20405	전 측	별표 TR-4000, 외장은 B형	1대
20406	녹 음 기	소니, 모델 TC-110 A (외국산), 휴대용	1대
20407	미 서	금성사제품, M-802형	1대
20408	파 아 노	수도피아노, 셀렐 5-5 A (전반 88개)	1대
20409	캐 비 릴	한국제품, 철강제양복장, 양문, 안설합 2개 (페인트도장) 121cm X 57.6cm X 181.8cm	1개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위
20410	재 봉 틀	드레스미싱, DB형, 특객실(무광테이블)	1 대
20411	석 유 난 토	금성사제품, SR 5060	1 대
20412	석 유 곤 토	금성사제품, KC 1510	1 대
20501	수도료(기본)	가정용, 전용전, 월간기본요금포함 10㎥	10 ㎥
20502	" (초과)	가정용, 전용전, 16 ㎥초과분(서울,부산)기타시(10 ㎥)	16 ㎥
20601	청 소 료 (오물수거비)	일반가정, 1등급	1개월
20602	청 소 료 (입문제거비)	일반가정, 18 ㎥들이	1 통
20603	숙박료(호텔)	홀류, 득방, 침대, 1인 1박, 득탕부설 식사제외	1 일
20604	" (여관)	1류, 1인 1박, 득방, 한식온돌방 식사제외	1 일
20605	전 공 임	숙련공 급식제외	1 일
20606	복 수 임	숙련공 급식제외	1 일
20607	미 장 이 임	숙련공 급식제외	1 일
20608	철 장 이 임	숙련공 급식제외	1 일
20609	장 부 임	급식제외	1 일
30101	전 기 료	가정용(기본요금 및 세금포함)	30KWH
30201	연 탄	소형 22공탄, 직매점 판매가격(배달 료제외), (상표지정)	10개
30202	가 스	유공제품, 가정용, 프로판가스(배달료 와 통값 제외)	10 kg
30203	矣	침나무 속, 흑탄	100 g
30301	석 유	유공제품, 등유	2 ℥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30302	성 냉	가정용대형(먹용) ; 8각형 450개/피들이 (상표지정)	1 통
30303	양 초	6개들이, 잡당 300g정도(상표지정)	1 감
40101	마 춤 신사복 (여름용)	제일모직, 트로피칼(율50%, 폴리에스터 50%), 인견반침	1 벌
40102	마 춤 신사복 (겨울용)	제일모직, 순모복지(헤링본) 52S/2 인견반침	1 벌
40103	마 춤 속녀복 (여름용)	경남모직, 실크스카치가드, 팔없는 원피 스, 나이론다후다반침	1 벌
40104	마 춤 속녀복 (겨울용)	경남모직, 미라노저지(율30%, 카시밀 론70%), 투피스, 나이론다후다반침	1 벌
40105	마 춤 코트	제일모직, 베니온2층직, 남자용 율 100 %, 인조밍크반침	1 벌
40106	마 춤 오바	경남모직, 여자용순모, 홈빠이루 8S/2, 기모, 인견반침	1 벌
40107	한 복	성인여자춘추용, 앙고라, 상하 각각 3 겹(통사이에 망사실)기성복	1 벌
40108	학 생 복 (여름용)	남자중학생용, 상의는 TC(65%포리에스 터35%면)청색, 하의는 TR(50%포리에스 터50%레이온), 기성복 4호	1 벌
40109	학 생 복 (겨울용)	남자중학생용, TR 100% 레이온반침, 기성복 4호, 흑색	1 벌
40110	아동복	자지미, 반팔원피스, 유색, 기성복 (8~9세용)	1 벌
40111	잠 바	스카이론, 출추용, 성인남자용, 작크부착 긴팔, 나이론다후다안반침기성복	1 매
40112	와이셔어츠 (긴 팔)	사자표, 시대론 PPP(폴리에스터 65%, 면 35%)기성복	1 매
40113	와이셔어츠 (반 팔)	사자표, 시대론 LP(폴리에스터 65%, 면 35%)기성복	1 매
40114	남방셔어츠	남자성인용, 반소매, 폴리에스터 100%, 유색, 기성복	1 매
40115	내 의(면)	남자성인용, 겨울용 상. 하 25S, 무색 (상표지정)	1 벌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40116	내의(화학사)	남자성인용, 겨울용 상·하무색, 폴리에스터 100% (상표지정)	1 벌
40117	면 네이비 어츠	남자성인용, 반팔 38S, 흰색(상표지정)	1 매
40201	광 목	면 16S X 16S, 폭 88.9cm, 표백 안된것 (1마) (상표지정)	91.4 cm
40202	포 플린	면 30S X 32폭 91.4cm, 날염 (상표지정)	91.4 cm
40203	옹	면 100% 경사 20S, 위사 10S, 폭 36인치 양면기모, 백색(1마) (상표지정)	91.4 cm
40204	나이론 태피터	나이론 100%, 70 태니엘, 폭 94cm, 유색	91.4 cm
40205	실 (재봉사)	면 100%, 30S/3, 길이 4,500m, 흰색 (상표지정)	1 권
40206	실 (화학사)	한일합성, 아크릴 100%, 20S/2, 원물용, 유색	453.6 g
40207	솜	면, 저대포장, 3kg들이 흰색 (상표지정)	1 포
40208	이불	지지미원단, 카시미론솜 6회(2kg정도) 2인용 (상표지정)	1 장
40301	마춤구두(남자용)	신사용, 복수혁, 나이론창, 나이론굽, 검은색	1 켤레
40302	" (여자용)	숙녀용, 합성피혁(크라리노칠피혁), 나이론창, 프라스틱굽	1 켤레
40303	고무신 (남자용)	말표, 흰색, 260mm, 9000 백 남대(KS표시품)	1 켤레
40304	" (여자용)	말표, 흰색, 230mm, 9000 백 여대(")	1 켤레
40305	운동화	말표, 남학생용, 면직, 흑색, 스파이크형, 230mm	1 켤레
40306	비신	말표, 남자성인용, 반장화, 흑색고무제품 260mm	1 켤레
40401	양말(남자용)	성인용, 추동공, 나이론 20%, 면 80% 단색 (상표지정)	1 켤레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40402	양말(여자용)	추동용, 나이론 100%, 단색(상표지정)	1 켤레
40403	" (아동용)	추동용, 카바양말, 나이론 100%, 단색(8~9세용)(상표지정)	1 켤레
40404	스 타 킹	반달표, 살색, 나이론 100%	1 켤레
40405	장 잡	면사 23S, 흰색, 작업용, 중품	1 매
40406	넥 타 이	동아견직, 폴리에스터 100%, 최신형	1 매
40407	마 블 러	남자성인용, 본면, 40S 단사(110cm X 30cm), 중품	1 개
40408	도 자	중고교생용, 율 70%, 나이론 30%, 방모사 나이론안발침, PVC喟	1 개
40409	가 방	남자중학생 율 100% PVC, 면 접착(스폰진실)	1 개
40410	모 포	한일합섬제품, 한일메리노일반용(2.1m X 1.4m) 위사는 카시미론 100%, 경사는 면 100%	1 매
40411	수 견	타올, 면 23S, 80cm X 32cm정도, 유색(상표지정)	1 매
40412	우 산	협립제품, 흠살 10개, 2단, 나이론다후다, 검은색	1 개
40413	양 산	협립제품, 흠살 10개, 2단, 나이론다후다, 유색	1 개
40414	손 복 시 계	오리엔트 19석, 남자용, 카렌다형, 방수수동태업, 스테인레스케이스, 국내조립품	1 개
40415	금 반 지	순금(99%), 3.75g, 무늬단조(수공임포함)	1 개
40416	핸 드 배	비닐제품, 미흔여성용, 최신중형, 보통장식, 단색(상표지정)	1 개
40417	안 경	남자보안용, 국산테(세루로이드 6mm), 국산알(슈퍼겔), 갈색	1 개
40501	세 탁 비 (양복)	신사복상·하, 드라이크리닝(다림질 포함)	1 회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40502	세 탁 비 (와이셔어츠)	데드론제품 (다림질포함)	1 회
40503	제 봉 로	부인용, 춘추용한복 (화학사옷감, 3겹) 수공임.	1 벌
40504	의복수선료	신사복, 짜집기, 3~4정도	1 회
40505	신 수 선 료	남자구두 1켤레, 헛 칭수선료 (재료값 제외)	1 회
40506	구 두 닦 이	남자용단화, 경정색, 보통광택	1 회
50101	영 양 제	비타엠 (유유산업), 100정들이	1 병
50102	감 기 약	노바킹당의정 (동광약품), 10정들이	1 병
50103	소 화 제	부채표활명수 (동화약품), 60㎖들이	1 병
50104	항 생 제	베프라사이클린 (중근당제약) 250mg 10캡슐	
50105	해 득 갈 장 제	박카스 D (동아제약), 100cc들이	1 병
50106	구 층 제	비페라 (중근당제약) 12정들이	1 병
50107	외 상 약	마큐름액, 15cc들이	1 병
50108	진 찰 료	종합병원, 보통초진료	1 회
50109	일 원 료	종합병원, 일반환자 2등 (식사포함, 약대제외)	1 일
50110	분 만 료	종합병원, 2등, 2박3일입원, 경산, 정신분만 (식사포함, 약대제외)	1 회
50111	엑 스 - 레 이 콜 영 료	종합병원, 종부, 직접, 보통, 단순 활영 (14인치×14인치)	1 회
50201	비 누 (회장)	코티벌풀비누 8,000번 (중산유지)	1 개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50202	비 누(세탁)	일반가정용, 2호 350g, (상표지정)	1 개
50203	" (가루)	럭키 하이타이, 비닐포장 100g들이	1 포
50204	치 약	럭키치약, 100g들이 (중형)	1 개
50205	칫 솔	럭키 뉴 777, 성인용 (케이스포함)	1 개
50206	화장크림	모노바바니싱크림, 60g들이	1 잡
50207	화장분	모노바 밀크파운데이션, 35g들이	1 잡
50208	화장수	모노바이스 트린센트로손 120ml들이	1 병
50209	포마드	오스카향수포마드, 60g들이	1 잡
50210	화장지	장미표 1번 (원통형), 흰색	1 개
50211	살충제	에프킬러 S 애어로졸 (삼성제약), 수압 분무식 300ml들이	1 통
50212	이용료	성인 (착유포함), 중류	1 회
50213	미용료(고데)	성인여자 (가발·갓트로제외), 중류	1 회
50214	" (파마)	성인여자, 보통파마 (체리파마액), 중류	1 회
50215	목욕료(성인)	남자, 일반대중탕	1 회
50216	" (아동)	일반대중탕 (7세이하)	1 회
50301	버스료(좌석)	성인, 시내 1구간	1 회
50302	" (일반)	성인, 시내 1구간	1 회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50303	버스료 (고속)	서울-부산간, 성안, 평도	1 회
50304	택시료 (기본)	시내, 기본요금 (2km)	1 회
50305	" (초과)	2km 초과요금	1 회
50306	기차료 (완행)	대인, 40km	1 회
50307	" (급행)	대인, 보통급행, 40km	1 회
50308	항 공 료	대한항공, 서울 부산간, 성인, 평도	1 회
50309	선 박 료	국내, 여객운임, 성인, 3등실, 20해리	1 회
50401	전화료 (기본)	가정용 1대, 시내통화료	1개월
50402	" (도수)	가정용, 시내통화료 200회	200 회
50403	우편료	국내, 편서봉서, 20g 이내	1 통
50404	전 보 료	시외, 보통, 10자이내	1 회
50405	소 - 포 료	국내, 6kg까지	1 개
50501	교 과 서 (국민학교)	4학년 1학기용, 국어, 산수, 사생, 자연	4 권
50502	교 과 서 (중학교)	영어 (중1, 미들스쿨) 수학 (중1, 중등 수학)	2 권
50503	교 과 서 (고등학교)	영어 (고1 하이스쿨), 수학 (고1, 현대공통수학-이성현 저)	2 권
50504	국 민 학 교 육 성 회 비	가구당 1인, 재학생분	1 분기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50505	남 입 금 (공중)	2 학년생	1 분기
50506	남 입 금 (사중)	2 학년생	1 분기
50507	남 입 금 (공교)	2 학년생	1 분기
50508	남 입 금 (사고)	2 학년생	1 분기
50509	남 입 금 (국대)	종합대학 또는 단과대학문과계 3 학년생	1 학기
50510	남 입 금 (사대)	종합대학 또는 단과대학문과계 3 학년생	1 학기
50511	남 입 금 (전문)	4 학년생, 기계과	1 학기
50512	유치원비	보육료 및 기성회비	1 개월
50513	참고서	엣센스영 한사전 (민중서관), 3×6판, 인도지, 비닐포지, 1,680페이지	1 권
50514	학원비 (입시)	네 학원시준비 영어단과반, 1 일 100분 강의 보통강사수강료	1 개월
50515	학원비 (자동차)	지정 자동차학원, 본과영업반 8주과정 수강료 (입학금, 책값, 면허수수료제외)	1 개월
50516	학원비 (양재)	재단과, 4개월과정 수강료 (입학금제외)	1 개월
50517	도서관비 (국공립)	성인, 일반 열람실	1 회
50518	도서관비 (사설)	학생, 일반 열람실	1 일
50601	볼펜	모나미 153, 청남색, KS 표시품	1 개
50602	연필	동아연필 HB1000, 한나무 (지우개부착), KS 표시품	1 다스
50603	단년필	파일롯트 B형 (W 400)	1 개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50604	노 트 (대)	모조지 16 매 (표지포함), 18.6 cm × 26.5 cm (상표지정)	1 권
50605	〃 (소)	챙지 14 매 (표지포함), 14.5 cm × 20.5 cm (상표지정)	1 권
50606	도 화 지	마니라지 (45.4 kg) 1면 사용, 수재화용, 8 절지	1 장
50607	시 험 지	챙지 16 절지	20 매
50608	봉 루	모조지제품, 훌봉루, 흰색	10 장
50609	크 래 파 스	모나미 왕자표, 짙은파스 (6 cm정도) 22 색들이	1 감
50610	잉 크	청색, 파일롯트잉크, 30cc 들이	1 병
50701	신 문 구 득 르	동아일보, 가정매달	1 개 월
50702	주 간 지	주간한국, 32면	1 부
50703	월 간 지 (여성지)	주부생활 (당월분)	1 권
50704	월 간 지 (예증지)	아리랑 (당월분)	1 권
50705	월 간 지 (아동지)	소년중앙 (당월분)	1 권
50706	월 간 지 (종합지)	신동아 (당월분)	1 권
50707	월 간 지 (문예지)	현대문학 (당월분)	1 권
50708	영화 관람료 (방 화)	총천연색, 상영시간 100분정도, 입장 세포함 (각종구호금제외)	1 회
50709	영화 관람료 (외 화)	"	1 회
50710	텔 라 비 전 시 청 청 르	1 대	1 개 월
50711	고 궁 입 장료	고궁 및 유원지, 성인	1 회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50712	사 진	명함판, 흑백색 3~4매 (상류사진판)	1 조
50713	필 룸	로터, 폭 35mm, 20장 촬영용, 국내재본	1 통
50714	장 난 감	유색, 고무공, 직경 18cm정도	1 개
50715	삼 률자전거	어린이 4~5세용, 1인용, 보통장식	1 대
50716	운 동 기 구	축구볼, 보급용 (중앙구), 소가죽 32피	1 개
50717	해 쿄 트 판	IP형, 지름 27cm, 스트레칭, 국내일류 가수신곡최신취입	1 장
50801	담 배(한 강)	12개들이(필터)	1 잡
50802	"(청 자)	20개들이(필터)	1 잡
50803	"(비둘기)	20개들이(필터)	1 잡
50804	"(파고다)	20개들이(필터)	1 잡
50805	"(남대문)	20개들이(필터)	1 잡
50806	"(환 희)	20개들이(필터)	1 잡
50807	"(아리랑)	"	1 장
50808	"(명 승)	10개들이(필터)	1 잡
50809	"(새마을)	20개들이	1 잡
50810	"(개나리)	"	1 잡
50901	행정수수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 발급	1 통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50902	행 정 수수 료 (호적초본)	호적초본 발급	1 통
50903	행 정 수수 료 (인감증명)	인감증명원 발급	1 통
50904	행 정 수수 료 (병적증명서)	병적증명서 발급	1 통

II. 조사상 문제품목의 참고사항

쌀~상품과 중품을 명확히 구별하여야 하며 대상처별로 등급이
상이한 경우에는 가격계열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일품질 규격
을 조사할 것.

어개류~생선의 질이에 상당하는 무게를 알아 두었다가 중량 단위
로 판매하는 대상처의 올바른 가격을 조작할 것이며 질이 다른 경
우에는 중량을 중심으로 가격을 환산할 것.

목장우유~협동조합에서 고장적으로 배달하여 주는 가격을 조사하여
야 하며 제과점이나 일반점포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미역~지역별·산지별로 가격이 상이하나 반드시 규격을 확인한 후
에 조사할 것.

마늘~규격에 맞는 접당 무게를 확인하여 조사할 것.

예컨대 3.75kg(1판) 단위로 판매되는 경우 접당 무게를 파악하
고 있어야 환산이 가능함.

곶감~반드시 곶이로 되어 있는 것을 조사할 것이며 질으로 끓어
서 포장한 것을 조사해서는 안된다.

파자류~항상 상표와 중량을 확인하여 조사할 것이며 특히 잡량에
유의하여 그 사유 및 가격을 정확히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밀 크~목장 우유와는 구별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약 주~용기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므로 병술을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방 세~방세조사의 대상은 방이므로 가구주의 변동이 있어도 대상처는 변동되지 않으며, 세의 종류가 변경되어도 대상가구를 변동하여서는 안된다.

예컨대 동일한 방에 A가 전출하고 B가 전입한 경우나, 전세가 월세(보증부월세, 삭월세, 월세)로 변경되어도 대상처는 변동되지 않으며 변동된 사실을 그대로 기입하여 보고한다.

즉 A가 전세로 200,000원에 세들어 있다가 전출하고 B가 250,000원에 전세 입주하면, 조사표에는 가구주 성명을 B로 기입하고 50,000원 인상된 것으로 보고 동락사유란에 A가 전출하고 B가 전입한 사실을 기입하며, 200,000원 전세로 있던 A가 보증금 100,000원에 월세 5,000원으로 보증부월세로 변경되었다면, 전분기는 전세 200,000원으로 기입하고, 금분기에는 보증부월세란에 보증금 100,000원 매월 지불액 5,000원으로 기입하고 동락사유란에 세의 종류변경을 기입하여야 한다.

• 수도료~가정용은 1972년부터 초과사용량에 대하여는 누진율을 적용하므로 요금환산에 유의하여야 한다.

서울의 경우를 예시하면, 인상전에는 기본수량 10㎥에 기본요금 80원, 초과사용량 1㎥당 10원으로 기본로 80원, 초과로 160원(10원

$\times 16 \text{ m}^2$) 이었으나, 인상후에는 기본료가 10 m^2 에 150 원, 초과사용료는 11~20 m^2 의 경우 1 m^2 당 15 원, 21~30 m^2 의 경우 1 m^2 당 20 원이므로 기본료는 150 원, 초과료는 270 원 ($15 \text{ 원} \times 10 \text{ m}^2 + 20 \text{ 원} \times 6 \text{ m}^2$) 이 된다.

또한 수리비, 시설비, 기타, 영선로 부과징수는 제외된다.

오물수거비~지방별로 1 등급 (월수입, 세산세, 전평등 택일) 을 명확히 파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호텔료~율류란 외국인이 주로 투숙하는 관광호텔이 아니고 내국인이 주로 투숙하는 호텔을 말한다.

연 탄~가정용 소형 구명탄으로서 직매점 점두가격을 조사한다.

배달료는 거리의 원근 및 위치에 따라 다르므로 조사가격에서는 제외된다.

남자극투~복수 혁이라 함은 인조합성 피혁이 아닌 우피를 말하며 기성화를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비 신~단주나 작크가 부착되지 않은 반장화를 조사하여야 한다.

손목시계~남자용 오리엔트 19 석으로서 요일과 날자가 나오는 것으로 (카렌다형) 수동이며 국내 조립품을 조사한다.

금반지~순도 (99%) 를 유지 하며, 수공임을 포함하므로 단순한 무늬가 있는 것을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수공임의 변동에 유의하여야 한다.

피복류~퍼복 및 장신구는 유행에 민감하므로 특히 상표, 원료의 성분(수, 데니엘, 혼방의 경우 혼합비율등) 색채, 형태 등에 항상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수(手)와 데니엘(Denier)은 실의 굽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수는 면직·모직물에 데니엘은 생사·나이론 직물에 사용된다.
수(s)~면직물의 경우는 원면 1파운드(453.6g)로 걸이 840야드(YDS)의 실을 뽑았을 때의 실의 굽기를 말하며, 모직물의 경우는 1kg의 원포로 1,000m의 실을 뽑았을 때의 실의 굽기를 말한다.
데니엘~나이론 섭유 1g으로 9,000m의 실을 뽑았을 때의 굽기를 말하며, 생사 450m 무게가 0.05g일 때 1데니엘이라 한다.

진찰료~전문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에서 보통 초진료를 조사한다.
따라서 특진료, 새진료를 조사해서는 안된다. 이하 입원료, 분만료, 액스-레이·촬영료도 같은 종합병원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입원료~일반환자란 응급의 특수진료를 요하는 환자가 아니며, 병원에서 일을 적으로 배급하는 식사는 포함하되 병원에서 별도로 계산하는 약값은 제외한다.

분만료~경산이란 초산이 아닌 것을 말하며, 정상분만이란 특수진료를 요하지 않은 경우이고 따라서 특별히 투입되는 약값은 제외되며, 다만

지혈제 등 분만료와 별도로 계산되지 않고 모든 산모에게 일률적으로
투입되는 약값은 분리 포착하기가 곤란하므로 제외되지 않는다.

또한 2박 3일 입원이란 평상적인 산전, 산후 처리기간이므로 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입원료는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

간혹 전문병원에 따라서는 남아, 여아의 분만료에 차등을 두는 경우
가 있으나 종합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차등을 두지 않으며, 만일 차등
을 두는 경우가 있다면 남아분만에 대한 산모측의 팀으로 간주하며
그 차액은 고려될 수가 없다.

이용료~중류라 함은 광광호텔 등의 특수 이발소가 아닌 일반 이발
소를 말하며, 보통의 착유를 포함하여 특수 서비스(손톱손질, 맷사아
지 등)로 인한 팀은 해당 업소가 이용료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고
려될 수 없다. 이하 미용료도 같다.

목욕료~터키탕, 사우나독크 등 특수 목욕탕이 아닌 일반 대중탕을
조사대상으로 남자 목욕료를 조사하는데 특히 아동의 경우 7세 이하
를 기준으로 하나, 지방에 따라 성인, 아동, 유아를 각각 구별하는 경
우에는 기준에 가장 가까운 요금을 조사한다.

예컨대 13세 이상을 성인, 6~12세까지가 아동, 5세 이하가 유아
로 구분되면 유아의 목욕료를 조사하며, 10세 이상을 성인, 5~9세
까지가 아동, 4세 이하가 유아이면 아동의 목욕료를 조사한다.